

발송번호: 9-5-2017-068169611
발송일자: 2017.09.27.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4, 402호
(역삼동, 혜전빌딩)(특허법인아이엠)
특허법인아이엠[조영철]

06135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등록결정서

출원인성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특허고객번호:
120160740265)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8층(태평로1가,코리아나호텔)
대리인명칭 특허법인아이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4, 402호 (역삼동,
혜전빌딩)(특허법인아이엠)
지정된변리사 조영철 외 4명

출원번호 42-2016-0000461
상 품 류

이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결정합니다.
※ 상표권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서울50플러스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 42-2017-0040657

공고일자 : 2017.04.18

2017.09.27.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심사관 임형선



<< 안내 >>

1. 등록료 및 등록세 등의 납부 마감일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이며, 기간내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추가 30일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하시는 경우 2만원의 기간연장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함).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추가납부기간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료 및 등록세 등

- 등록료 일시납부시 : 211,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211,000원이며, 2012. 4. 1. 출원 건부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함)
- 등록료 분할납부시 : 1회 및 2회 각각 132,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각 회차별 132,000원이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함)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9,120원은 등록료와 함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없음

※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정보 : (11개)

【 분할납부제도 안내 】

- ① 2010. 7. 28. 출원 건부터 상표등록료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존 : 10년 1회 일시납부 → 변경 : 10년 1회 일시납부, 5년 2회 분할납부 중 선택납부가능
- ②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납부회차란을 '1회차' 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의 결정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특허청 ☎042-481-5273[527](담당심사관 임형선)로, 등록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해외출원 안내 】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생산, 판매 등) 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관련한 등록결정서 발송 안내 】

2017년 4월 1일부터는 특허고객번호, 대리인번호의 (통지서)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이의결정에 따른 등록결정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전자문서로 발송된 통지서를 일주일 이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표권 설정등록 등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총금액 등이 정확하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 (1) 특허료 · 등록료
 - (2)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기타
 - (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
 - 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4)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 - 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원' 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설정등록료는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ATM기 또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지 금액에 한하여 입금 가능하며,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전용계좌: 농협은행 790-0594-9510-001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9-5-2017-0681696-11	
출원·등록·심판번호	42-2016-0000461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211,000원
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인지세		₩0원
총금액		₩220,12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납부자 성명	특허법인아이엠[조영철]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4, 402호 (역삼동, 혜전빌딩)(특허법인아이엠)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면제/감면사유



한국은행취급점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9-5-2017-0681696-11	
출원·등록·심판번호	42-2016-0000461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211,000원
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인지세		₩0원
총금액		₩220,12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인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료 납부 안내>>

1.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상 표	설 정 등 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32,000원)	○ 2012. 4. 1. 이후 출원하여 설정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하거나 2012. 4. 1.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하는 것부터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원복금액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갱신등록시
	지정상품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	
	존속기간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 (※ 다만, 2회 분할납부의 경우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2. 납부기간 :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수료(20,000원)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등록료 및 지방세 납부방법

- ①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giro.or.kr>)에서 등록료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합니다.(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② 「납부서」(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이용하는 방법 :
 - ㉠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특허료를 납부합니다.(단,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 ㉡ 「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납부서」를 작성한 후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
 * 보낼 곳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등록과

4. 일부 지정상품 또는 상품류를 포기하는 경우 : 설정등록료 납부시 일부 지정상품이나 상품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포기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한 후 등록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매10년 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